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3~40

제출일자	2003. 9.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개정이유

- 주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설을 이행한 도축장 경 영자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도축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함(농림부 및 경남도 권고사항)
- 징세비에 미달되는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징세비 수준 이상으로 조 정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 지방세법에 규정한 주민세중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주민세중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함(안 제21조).
 - 3.000원 ⇒ 5.000원
-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연장함(안 제99조).
 -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돼지에 대한 도축세율을 2004.9.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함(안 부칙제2항).
 - 1.000분의 10 ⇒ 1.000분의 5
- 지방세법에 규정한 주민세중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에 관 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3조의 2신설).
 -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및 수정신고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게 함께 신고하고 군수에게 납부함(안 제1항).
 -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도 함께 부과고지 함 (안 제2항).
 - 세무서장은 소득세할을 신고 또는 부과고지시 그 내역을 군수에게 통보 함(안 제3항).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를 수정함 (안 제33조 내지 제56조 및 제58조 내지 제63조).
 - 제조담배 ⇒ 담배
-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안제29조제1항제1호다목)
 - 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개정근거

- 지방세법 (법률 제6838호 2002.12.30)
-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849호 2002.12.30)
-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88호 2002.12.31)
- 경상남도 세정13434-10892(2003.7.4)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시행규칙제7조의2제2호에서"를 "시행규칙제6조의2제2호에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1호 가목중 "3,0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 하여야 한다.

-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52조제1항중 "읍·면에"를 "군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당해 읍·면 안 의"를 "군내의"로 한다.
- 제53조제1항중 "제조담배로"를 "담배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조담배는" 을 "담배는"로하고 제1호내지제3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 제54조제1항내지제2항중 "제조담배에"를 "담배에"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조담배가"를 "담배가"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제조담배를"을 "담배를"로 한다.
- 제55조 본문중 "제조담배의"를 "담배의"로 한다.
- 제56조제1항 각호의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제조담배로 서"를 "담배로서"하고 "제조담배인"을 "담배인"으로 한다.
- 제58조 조제목중 "제조담배의"를 "담배의"로 하고, 본문중 "제조담배를"을 "담배를"으로 한다.
- 제59조제3호중 "제조담배의"를 "담배의"로 하고, 동조 제6호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 제60조 본문중 "제조담배의"를 "담배의"로 한다.
- 제61조제1항중 "제조담배에"를 "담배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조담배에" 를 "담배에"로하며, "수입 제조담배의"를 "수입 담배의"로 하며, 동조 제4 항중 "제조담배의"를 "담배의"로 한다.
- 제62조제1항제5호중 "제조담배의"를 "담배의"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제조담배를"을 "담배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제조담배"를 "담배"로 한다.
- 제63조제2항내지제3항중 "제조담배의"를 "담배의"로 한다.
- 제99조제2항중 "7월 10일까지를"을 "7월 31일까지를"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도축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2004년 9월 30일까지는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돼지에 대한 도축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세 율
돼 지	도살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5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 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u>시행규칙 제6</u> <u>조의2제2호에서</u> ····································
제21조(세율) ① (생 략) 1. (생 략) 가.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 의 세율: <u>3,000원</u> 나. (생 략) 2. (생 략) ② (생 략)	제21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u>5,000원</u>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신고납부) ① (생 략)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u>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u> 신고납부하여야한다. 1. ~ 4. (생 략) ③ ~ ④ (생 략)	
<신 설>	제23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 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 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 게 함께 신고하고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 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 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 지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9조(세율) ① (생 략) 1.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u>도시계획법</u>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 (라) (생 략) ② (생 략) 제52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그 밖에 농업소	(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①

현 행	개 정 안
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u>읍.면에</u>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u>당해 읍.면안의</u>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 <u>군에</u> ······ ②····· <u>군내의</u>
제53조 (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u>제조담배로</u>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제조담배는</u> 다 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u>제조담배</u> 가~라(생 략) 2. 씹는 <u>제조담배</u> 3. 냄새맡는 <u>제조담배</u>	···· <u>담배로</u> 한다.
제54조 (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u>제조담배에</u>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u>제조담배에</u>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 별송품으로 <u>제조담배가</u>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담배에 ② 다 당배에 ③

현 행	개 정 안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의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u>담배를</u> ······
제55조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u>제조담배의</u>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5조 (과세표준) · · · · · · <u>담배의</u> · · · · · · · · · · · · · · · · · · ·
제56조 (세율) ① (생 략) 1. 흡연용의 <u>제조담배</u> 가 ~ 라 (생 략) 2. 씹는 <u>제조담배</u>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u>제조담배</u> 50그램당 650원 ② <u>제조담배로서</u>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u>제조담배인</u>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 2 (생 략)	제56조 (세율) ① (현행과 같음) 1. ····· <u>담배</u>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u>담배</u> ···· 3. ···· <u>담배</u> ···· ② <u>담배로서</u> ···· - <u>'담배인</u> 1 ~ 2 (현행과 같음)
제58조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 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9조 (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생 략)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4~5(생 략)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7~9(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60조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1조 (신고납부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	······· <u>담배의</u> ····································

현 행	개 정 안
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u>제조담배에</u>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 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대한 각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 (생략) ④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u>제조담배의</u> 품종. 수량. 세율. 세액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u>수입 담배의</u> ③ (현행과 같음) ④
제62조 (가산세) ① (생 략) 1~4(생 략) 5.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 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4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3조 (납세담보)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u>담배의</u> · · · · · · · · · · · · · · · · · · ·
제99조(납기) ① (생 략)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u>7월 10일까지를</u>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u>7월 31일까지를</u> ····